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선수용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사항

- 본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스포츠인을 보호하고 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제작·배포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 사용된 정의와 예시, 각각의 사례와 관련 법률은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용자 및 모든 상황에서 적용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선수 여러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 현장을 방관하지 않아야 스포츠계 인권침해가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PART 1

스포츠인권의 이해 | 7

1. 인권의 정의 | 8
2. 스포츠현장에서의 인권 | 8
3. 스포츠인권 현장 요약 | 8
4.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인권 강조 | 9

PART 2

예방 및 대응가이드 | 11

1. 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12
2.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15
3. 학습권침해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17
4. 사생활침해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19
5.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21
6.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등) 대응가이드 | 23



참고문헌 | 34





Part 1

스포츠

인권의 이해

1. 인권의 정의
2. 스포츠현장에서의 인권
3. 스포츠인권 현장 요약
4.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인권 강조



1. 인권의 정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2.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

3. 스포츠인권 헌장 요약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1조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스포츠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신체활동이다.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2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성별, 성적(性的) 지향,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운동능력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함)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체육단체 등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함)는 이 권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완전한 형태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누구나 원하는 신체활동을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신체활동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

제2장 스포츠는 자기표현의 도구이다.

제3장 누구나 스포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장 누구나 스포츠에서의 탁월함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제5장 누구나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6장 스포츠는 안전한 활동이어야 한다.

제7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8장 스포츠는 인권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로 인해 어떠한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 등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장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4.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의 인권 강조

올림픽현장 내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中

2. 올림픽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증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6. 올림픽 현장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IOC는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레저활동을 즐길 권리, 비차별, 안전, 기본욕구에 대한 존중 및 건강한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올림픽 아젠다 2020+5 권고사항 13번 통한 인권 강조

- 인권관련 전략적 틀 도입 승인(2022년 9월)
- 5개 핵심 집중 영역
 - 1) 평등과 비차별
 - 2) 안전과 복지
 - 3) 생계 및 양질의 일자리
 - 4) 발언의 자유
 - 5) 사생활 보호

올림픽 아젠다 2020+5는?

IOC 집행위원회가 2021년 3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로운 올림픽 개혁안으로 총 15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3번 권고안에는 한 조직으로서의 IOC, 올림픽대회의 주인으로서의 IOC, 올림픽무브먼트의 리더로서의 IOC가 인권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Part 2

예방 및 대응가이드

1. 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2.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 학습권침해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4. 사생활침해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5.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6.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등) 대응가이드

1. 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 시키거나 선수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행위 (밀치기, 발로차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기합, 얼차려 등)

(2) 방관적 입장의 폭력

집단 구성원들이 폭력 행동을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는 것 혹은 폭력을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행위 (선수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즉각적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선수가 부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이나 경기를 지속하게 하는 경우 등)

(3) 정신적 폭력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감정적 학대 행위

- ① 언어적 행위: 말이나 욕설 등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 (고함과 욕설, 외모 비하, 협박 등)
- ② 관계적 행위: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이나 겁을 주거나 따돌리는 것 (무시하기, 따돌리기, 비웃기 등)
- ③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 개인의 할 일이나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심부름 시키기, 음주 혹은 흡연 강요하기, 자유 시간 통제하기, 가스라이팅 등)

(4) 경제적 폭력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① 선수 개인 소지품과 개인 훈련 장비를 서로 간에 돌려주지 않거나 장기간 빌리는 행위 (스마트폰, 고가의 이어폰 등 IT기기, 브랜드 옷과 신발 등)
- ② 상금이나 부상의 상납 또는 갈취, 선물 등을 강요하는 행위 (생일, 명절, 회식 등 특정한 날에 부당한 선물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





1. 폭력

2) 스포츠폭력의 사례

·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관습

A운동부의 체육관은 여러 학년이 함께 사용하지만, A운동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으로 신입 부원들이 모든 체육관의 청소와 운동 장비 정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다. 신입 부원들은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을 신입들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재학생 선수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해 오던 것이라는 이유로 신입부원들에게 청소를 강요하고, 신입 부원 길들이기라는 명분 하에 의도적으로 체육관을 더럽히기도 한다. 게다가 불공정함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는 신입 부원은 '너는 우리 운동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하거나 괴롭히기 때문에 신입 부원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재학생들은 억울하면 1년만 참으라며 암묵적인 관습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② 폭력의 방조 또는 방관

이번 대회에서 부진한 실적을 낸 A선수와 동기인 B선수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선배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채팅방에는 연대 책임이라는 이유로 A, B선수와 같은 기수의 선수들이 모두 초대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선배들의 거친 욕설과 협박이 마구잡이로 올라오자, B선수는 감당하기 힘들어 채팅방을 나가보지만 계속해서 다시 채팅방에 초대되었다. 결국, 고참 선배 한 명이 말로는 안되겠다며 다른 선배들을 시켜 A, B선수와 동기들을 운동부실로 집합시켰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다른 선배선수는 감독님께 말씀을 드릴까 잠시 고민하였으나,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다.



폭력 행위를 지켜보고 방관한 학생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학교폭력 신고의무))



폭행 당시 옆에서 피해 학생을 지켜보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 현장에서 위압감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되기때문입니다.

* 위 사례와 같이 가해 학생의 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수 폭행죄가 성립하여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1. 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 폭력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경기장 및 훈련장

- ① 훈련 중 가혹행위(기합, 구타, 욕설 등) 근절을 위하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진다.
- ② 경기 및 훈련 중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등은 삼가한다.
- ③ 경기 및 훈련 준비와 정리는 모든 선수들이 동등하게 수행한다.
- ④ 선수 개인 소지품과 훈련 장비를 스스로 관리한다.
- ⑤ 다른 선수의 운동복과 장비를 훼손하거나 숨기지 않는다.
- ⑥ 공식적인 훈련시간 외의 개인 및 동료의 사적인 시간을 존중한다.
- ⑦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가 적절한 진료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합숙 및 일상생활

- ① 숙소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한 선수 본인이 책임진다.
- ② 선후배에 관계없이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한다.
- ③ 다른 선수에게 음주, 흡연,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④ 공식적인 훈련시간 외의 개인 및 동료의 사적인 시간을 존중한다.
- ⑤ 사진, 영상 등을 본인의 동의없이 SNS나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는다.
- ⑥ 평소 특정 선수의 외모와 말투, 행동을 놀림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⑦ 사적인 선물 강요 혹은 금품 거래를 삼가한다.



2.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성폭력의 유형

- (1) 신체적 성폭력
폭행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 가해 행위
- (2) 정신적 성폭력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말과 행동 혹은 상대에 대한 통제능력 행사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행위(성적 비유, 외모평가, 공개장소에서의 음란물 시청 등)
- (3)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행위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 (4) 스토킹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3) 성폭력의 사례

① 사진 도용 후 무단 유포

지역 친선대회 후 주요 경기 장면과 동영상, 단체 사진을 포함하여 선수들끼리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선수 중 한 명이 다른 선수들의 동의 없이 A 선수의 사진과 영상을 모호하게 편집하여 “반도의 hot한 운동선수 몸매”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만들어 본인 SNS 계정에 올린 것이 알려졌다. 해당 SNS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몇 승인된 사람들이 이미지를 캡처하여 자신의 다른 채팅방이나 SNS에 공유하면서 순식간에 A 선수의 사진은 노골적인 성희롱과 악플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A 선수의 항의와 신고로 원본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퍼져버린 사진으로 A 선수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디지털 공간내 성적 괴롭힘

같은 지역, 같은 종목 출신 운동부의 남자 선후배가 모인 단체 대화방은 합숙훈련 시즌이 끝나면 소속 여자 운동부원들의 사진이 경쟁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외모에 대해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데, 그 중에는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하거나 락커룸에서 탈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있다. 단체 대화방 멤버 중에는 본인의 개인 SNS나 오픈 채팅방에 이 사진들을 모아서 “#국대급_외모 #종목별_얼짱스타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서 온라인 투표를 하기도 한다. 본인의 사진이 이런 단체 대화방에 올라가 온갖 성희롱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선수도 있지만 단체대화방은 없애버리면 그만이라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 성폭력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경기장 및 훈련장

- ① 훈련 중 다른 선수와 신체 접촉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의 허락을 받는다.
- ② 경기 및 훈련 중 성적 굴욕감(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삼가한다.
- ③ 성폭력은 이성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간에도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④ 외모 관련 농담 혹은 성적인 이야기나 농담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⑤ 다른 선수의 신체 특정 민감한 부위를 계속 바라보거나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로 해당 선수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⑥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이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합숙 및 일상생활

- ① 단체 채팅방 내 음란물(사진 및 동영상, 각종 성인사이트 링크) 공유는 성폭력의 일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②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단체 채팅방에 특정 선수의 외모에 대해 평판하거나, 허락 받지 않은 개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절대 유포하지 않는다.
- ③ 샤워 및 탈의 중 다른 선수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지거나 씻겨주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금한다.
- ④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한 역할 부여는 성폭력에 해당함을 인지한다.
(예: 회식 시 술 따르게 하기 등).
- ⑤ 감독 및 코칭 스태프와 경기 및 훈련시간 외 사적인 만남은 삼가한다.
- ⑥ 진학 지도, 개별 훈련 등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배석시키거나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한다.
- ⑦ 공개된 장소에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사진 및 동영상, 각종 성인사이트 링크)을 보지 않는다.
- ⑧ 특정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성)폭력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성)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3. 학습권 침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학습권 침해의 정의

- (1) 수업결손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과도한 경쟁 및 훈련으로 인하여 일일 훈련회수 증가, 주당 훈련일수 과다로 정규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
- (2) 훈련 피로도로 인한 학업 소홀
선수 개인 신체 능력 및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학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
- (3) 학교 행사 불참
선수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안내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훈련일정을 계획하여 선수가 공식적인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
- (4) 형식적인 보충수업
보충수업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활용하고 보충학습을 선수가 알아서 하도록 방임하는 것

2) 학습권 침해 사례

- 운동과 학업 병행에 대한 선수 의견 무시

고등학생 A 선수는 부상이나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빠르게 선수생활을 종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은퇴 이후 지도자가 아닌 다른 길도 생각해보고 싶어서 학교 수업을 통해 기본 교양과 지식을 학습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나 지도자와 부모님은 운동해서 대학을 가면 된다며 훈련에 더 집중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팀에서 예외를 들 수 없다며 선수A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 수업 불참을 공문 처리 했다.

- 학습 결손

대회 준비를 하는 선수A는 새벽, 오전, 오후, 야간 하루에 네 번 연습에 참여한다.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팀에 피해가 갈까?'하는 마음에 연습에 빠질 수도 없다. 온종일 연습하는 시간 외에 수업을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되지 않고 잠만 자게 된다. 수업에 들어가는 것 또한 선수A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도자가 학교와 상의해서 수업일수를 정한다. 과도한 훈련으로 지친 선수A는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날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기 보다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이나 휴게실로 발길을 돌린다.

3. 학습권 침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①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임을 인식한다.
- ②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나의 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하고, 기초학력과 소양을 쌓으며, 진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한다.
- ③ 운동만큼이나 공부와 학교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교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지도자 혹은 학부모에게 제시한다.
- ④ 부모님과 학교에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학업과 운동 모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훈련이나 경기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학습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사생활 침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사생활 침해의 유형

(1) 심부름 강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심부름, 운전, 빨래, 청소 등을 대신 시키는 것

(2) 사적시간 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외박의 불허, 운동 이후 자유시간 및 사적 공간과 시간 침해 등의 생활 통제를 하는 것

(3) 외모/복장 통제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착용, 복장 등 운동과 무관한 외모 관리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하는 것

(4) 과도한 훈련일정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전에 공지된 일정을 초과한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개인 시간이 침해되는 것

2) 사생활 침해 사례

① 운동과 무관한 외모 간섭

제 나이가 스무 살인데도 염색, 외모 같은 것.. 지켜야 하는 규제가 한도 끝도 없이 많고.. 선배들이 기강을 잡는다고 후배들에게 매일 험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로 계속 주의를 주고... 제 자유란 절대 없어요.. 큰 폭력은 없지만 운동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터치를 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② 선후배간 사생활 간섭

선배들이랑 쓰는 게 진짜 불편했죠. TV도 못 봤어요. 문도 조용히 열고 나가야 했고요... 동성 지도자들도 힘들었어요. 숙소에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들어와서 단체생활의 규율이라며 막 휘 젓고 다녀요. 서랍장 같은 거 열어보면서, 야 옷 이거 정리 안 하나 이러면서, 서랍장에 개인서류 같은 거 보면서, 누가 뭐했네, 뭐했네 하면서 다 봐요."

③ 원치않는 회식

"미리 통보도 없이 갑자기 감독이 오늘 회식 있다 나와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이니까요. 제가 약속이 있어도 어쩔 수 없죠.. 운동선수는 빨리 쉬고 회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감독은 자기가 끝나야 회식이 끝나는 사람이라서 힘들죠. 어제도 먹기 싫은데도 술을 먹어야 하고 2차 노래방 가서 1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팀 전체가 가는데 저만 안 갈 경우 나중에 선배들에게 혼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선수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4. 사생활 침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① 선배와 후배 간에 위계를 만드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문화를 조성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선수의 이성교제 내용 등에 대해 과도한 관심은 삼가하는 등 사생활을 존중한다.
- ③ 단체 생활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간섭과 요구에 대해서는 지도자와 충분히 논의한다.
- ④ 동료 혹은 선후배 선수 간 부당한 간섭 및 요구, 지나친 관심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⑤ 일상생활에서 훈련 중 일어난 일을 빌미로 훈계하거나 통제시키지 않는다.
- ⑥ 동의가 없는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 SNS 공유를 하지 않는다.
- ⑦ 선수는 동료나 후배 선수들의 휴대전화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⑧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 목인 및 방관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 ⑨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신고 또는 문제제기를 원할 경우 지지하고 협력한다.



5.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

(1) 고용에 대한 부당한 압력

경기실적을 빌미로 해고에 대한 협박 등 학교 관계자 또는 학부모로부터 갑질 횡포를 당하는 것

(2) 경기출전 및 훈련에 대한 부당한 압력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선수의 출전을 강요하거나 갑질 등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성)폭력 잠재적 가해자로 대하는 행위

혐의가 없음에도 인권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를 가해자로 암시하거나 단정짓는 행위

(4) 무고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

지도자가 하지 않은 행위를 거짓으로 꾸며 해당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2)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사례

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지도자 A는 계약직 지도자로 팀에 합류했다. 하지만 감독은 피해자가 입사한 첫날부터 “매일 아침 자기에게 커피를 타오도록 지시하고”, “퇴근하기 전에는 자기자리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피해자는 모멸감으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5조(징계 사유 및 대상)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권 침해 정도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출전 정지부터 2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②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선수A 학부모는 선수A의 경기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지도자의 고유권한에 간섭을 했다. 지도자는 실력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출전기회를 부여한다고 대응을 하였지만, 학부모는 지도자의 계약문제를 협박삼아 계속 선수A의 출전을 강요했다.



학부모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징계 대상,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형법 제282조(협박죄)에 따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③ 선수들의 단체행동을 통해 지도자를 (성)폭력 주요 가해 주체로 허위 언급/신고/진술

지도자 A는 본인이 지도하던 B가 자기를 성추행 및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B선수의 신고 후 팀의 핵심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B를 지지함에 따라 논란은 더 커져갔다. A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미 인터넷에 해당 사건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부족으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과 SNS상에서 이 사건 이후 지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선수를 피해자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에 따라 허위신고 혹은 허위로 진술하게 해 상대방을 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지어내어 행동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① 선수는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 ② 훈련법, 선수 기용 등 지도자의 고유권한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③ 지도자의 정당한 지도활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본다.
- ④ 혼잣말이라도 명예훼손이 가능한 언어나 행동이라면 자제한다.
- ⑤ 불만이 있을 경우, 폭력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히 표현하여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시기질투로 인한 감정을 부정적인 행위(말대답, 반항, 헐박, 무시 등)로 표출하지 않는다.
- ⑦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시, 편파적이지 않게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한다.

※ 다음 행위는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 지도자 의사에 반한 성적 자유권 침해
- 지도자 의사에 반한 성적인 접촉 및 언어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지도활동(경기 훈련 및 모든 상황)중인 지도자의 영상 등을 지도자 동의 없이 무단 촬영 및 배포



6.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시 대응가이드

Q1. 내가 경험한 것이 폭력인가요?

폭력 유형 알아보기

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	폭력 피해 사례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게 했어요.(상해, 폭행)
	훈련이나 대회 기간 중에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요.(감금)
	강제(폭행, 협박) 혹은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갔어요.(약취, 유인)
	장난을 빙자해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어요.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인터넷, SNS에 퍼뜨렸어요.*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렸어요.(모욕)
금품갈취(공갈)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줬어요.(협박)
	옷, 장비 등을 빌린다고 하고 되돌려주지 않았어요. 돈을 걷어오라고 하거나 물건을 사오라고 했어요.
강요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 받았어요.(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집단적으로 저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요.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등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당했어요. 다른 선수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아요.
사이버폭력	저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려 저격했어요.
	저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마음대로 공개했어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냈어요.

위 내용은 폭력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시 대응가이드



Q1. 내가 경험한 것이 성폭력인가요?

성폭력 유형 알아보기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	성폭력 피해 사례
(강제) 추행	잘하라고 하면서 허락없이 꼭 껴안았어요.
	훈련이나 대회 기간 중에 신체부위를 슬쩍 스치고 지나갔어요.
	자세교정을 이유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졌어요.
	태도를 지적하면서 도구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짚었어요.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연애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질문을 하면서 성적 불쾌감이 드는 농담을 했어요.
	나의 신체부위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고 훑어봤어요.
강간, 유사강간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며 나(피해자)와 성적 접촉 또는 성관계를 했어요.
	나(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가해자의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었어요.
스토킹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와 사귀자고 계속 요구했어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으로 스토킹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나의 신체, 복장, 사생활을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디지털 성폭력	내 사진을 동의없이 웹하드, 웹 사이트, SNS 등에 게시하거나 단체채팅방에 유포했어요
	나의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했어요.

위 내용은 성폭력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등) 대응가이드

Q2. 나는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으로 즉시 신고하기



(1)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접수(익명 상담/신고 가능)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이메일 with@k-sec.or.kr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2876 / 02-6220-1376

전화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00~오후 09:00

토요일, 공휴일에는 온라인 상담신고하기 이용

방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 9층 (우:03737)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실

방문 가능 시간: 평일 오전 09:30~오후05:30

※ 스포츠윤리센터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상담사 확인 후 답변 제공



(2) 학교 및 교육청

신고 접수

홈페이지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www.safe182.go.kr

대표번호

(국번없이) 117/ (문자신고) #0117

전화 가능 시간: 24시간

방문

전국 17개소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3) 경찰서

대표번호

(국번없이) 112

전화 가능 시간: 24시간

방문

전국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6.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시 대응가이드



Q3. 대응절차 체계도

도움 요청 시/피해 사례 인지 시, 협회 및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내용 숙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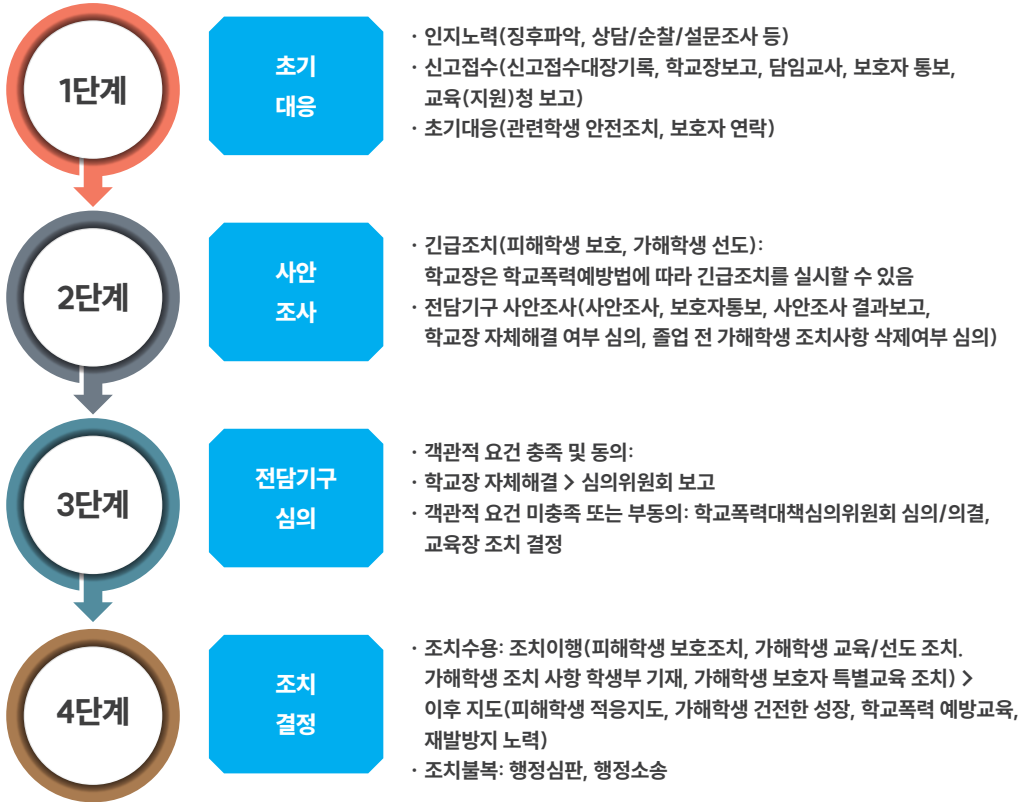
Q4. 신고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스포츠윤리센터



6.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시 대응가이드



Q4. 신고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학교 및 교육청(폭력)



Q4. 신고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학교 및 교육청(성폭력)



6.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시 대응가이드



Q5. 신고 후 비밀이 보장 되나요?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돼요.

피해자 정보는 폭력 사안처리 담당자에게만 공개됩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신고 이후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가해자가 협박하거나 소문을 내는 경우

- 가해자는 2차 가해로 추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원하는 경우

- 가해자가 학생·지도자라면 공간 분리, 지도 배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위협이 염려되는 경우

- 수사기관 · 법원에 신변안전조치, 구속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차 가해 : 폭력 피해자, 증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 쉼터 등 시설에서의 보호, 신변 경호, 집 주변 순찰 지원 등

Q3. 나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5)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기관	연락처	지원내용
스포츠 윤리센터	T. 1670-2876 / 02-6220-1376	·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 상담 및 신고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 의료·법률·심리·정서·임시주거 지원
국가인권 위원회	T. 02-2125-9862 / 1331 메일 sports@nhrc.go.kr 텔레그램 : @hrsports	· 스포츠인권 진정사건 조사 :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차별 피해상담 및 피해사례 조사 구제 ·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심리 및 법률상담 무료지원
여성 긴급전화	T. 1366 365일 24시간 운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호 또는 긴급상담 지원 · 전화권역(시·도)별로 설치·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긴급 피난처 운영 임시보호 (*최대 7일간 숙식제공, 데이트폭력 피해자 최대 30일 보호)
해바라기 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확인가능	·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상담, 의료지원 · 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전국에 39개 센터운영 ·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만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 단, 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15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T. 02-735-8994 365일 24시간 운영	· 상담 신청 시 상담과 함께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등 연계 지원

기관	연락처	지원내용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T. 02-817-7959 메일 kcsvrc@cyber-lion.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제도적 개선 : 사이버성폭력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하여, 법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 피해지원 : 상담지원, 영상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를 도움 · 교육 : 교육, 인식 개선
성폭력 피해 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기관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확인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 피해자 및 가족 지속상담 · 수사·재판 절차 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 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피해상담
성매매 피해 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기관 '성매매피해 상담소' 확인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자활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 보호 및 상담,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 진학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대한 인권센터	전국 62개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상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 처리 · 학내 사건의 상담·조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9개 전국 지원센터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홈페이지의 전국센터 안내에서 확인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지원 :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돌봄 비용, 취업지원비 등의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회복을 도움 · 주거지원 :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주거환경개선, LH 주거지원 신청 절차 안내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 · 법률지원 : 법과 형사사건 절차의 어려움으로 자문 및 안내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재판모니터링, 법정동행 등을 지원("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심리지원 : 불의의 범죄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상담, 개별·집단 치유프로그램(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 · 기타지원 : 전국 지원센터의 특성의 맞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을 도움

기관	연락처	지원내용
대한법률 구조공단	T. 132 https://www.klac.or.kr 전화, 사이버, 화상상담(예약), 방문상담(예약)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스마일센터: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	T. 02-333-1295 (24시간 전화접수 및 상담) 등록면담, 심리치료 등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강력범죄 피해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 겪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회복을 지원 ·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 서비스



참고문헌

IOC(2022), IOC Strategic Framework on Human Rights

IOC(2021), Olympic Agenda 2020+5

IOC(2021), Olympic Charter

대한체육회(2019).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드선스

고용노동부(2020). 2020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2020).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안내서.

-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향하여 스포츠가 버려야할 것들

국가인권위원회(2020).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2021). 스포츠인권 현장/가이드라인 정비 연구

스포츠윤리센터(2021). 「스포츠 인권증진 정책 발굴」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스포츠인권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집(2021) 중/고등학생선수 대상

「스포츠인권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집(2021) 프로/실업팀선수 대상

「스포츠인권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집(2021) 초/중/고 학생선수 학부모 대상

교육부(202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학생을 위한 성폭력 신고 가이드



참고문헌

스포츠윤리센터(2022). 브로슈어

대한빙상경기연맹(2022). 대한빙상경기연맹 인권 가이드라인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edunet.net)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afe182.go.kr)

